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Index in Fishing Regions

2017. 08.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한광석 : 제1장 ~ 제4장

<외부연구진>

김한슬 (주)R&R 팀장 : 제4장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최용석 (순천대학교 교수)

여기태 (인천대학교 교수)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어촌지역 고용 통계와 문제점 · 5

- 1. 어촌지역 고용관련 통계 현황 5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제3장

우리나라 고용관련 통계 분석과 시사점 · 23

- 1. 고용 통계 개요 23
- 2.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조사 현황 25
- 3. 가구대상 고용통계 30
- 4. 종합비교 및 시사점 41

제4장

어촌지역 고용 통계 구축방안 · 44

1. 어촌지역 범위 설정 44
2. 기존 통계를 활용 가공하는 방안 46
3. 조사통계 구축방안 5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67

1. 결론 및 요약 67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 73



부록 · 75

〈표 2-1〉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6
〈표 2-2〉 어업총조사의 고용관련 통계 내용.....	7
〈표 2-3〉 어업총조사 주종사분야(2015).....	8
〈표 2-4〉 (농림)어업조사 개요.....	9
〈표 2-5〉 어업조사 고용관련 조사내용.....	11
〈표 2-6〉 어업조사 주종사분야(2016).....	11
〈표 2-7〉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고용관련조사내용.....	13
〈표 2-8〉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고용 관련조사 결과표.....	13
〈표 2-9〉 수산업 특수분류 현황.....	14
〈표 2-10〉 수산업 특수분류 산업 상세표.....	16
〈표 2-11〉 수산업실태조사 고용관련 조사내용.....	19
〈표 2-12〉 수산업실태조사 고용관련 조사결과.....	19
〈표 3-1〉 사업체 또는 가구별 고용통계조사 현황.....	24
〈표 3-2〉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현황.....	25
〈표 3-3〉 전국사업체 조사 개요.....	27
〈표 3-4〉 경제활동인구총조사 개요.....	32
〈표 3-5〉 경제활동인구총조사 고용관련 조사항목.....	33
〈표 3-6〉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34
〈표 3-7〉 한국노동패널조사 연혁.....	37
〈표 3-8〉 고용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조사항목.....	40
〈표 3-9〉 한국고용패널조사 조사항목의 활용방안.....	40
〈표 3-10〉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비교.....	41
〈표 3-11〉 가구대상 고용조사의 비교.....	42
〈표 4-1〉 전국 어촌지역 수.....	46
〈표 4-2〉 어촌지역내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50
〈표 4-3〉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51
〈표 4-4〉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52
〈표 4-5〉 시군구별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53
〈표 4-6〉 시군구별 어촌지역 음식점업(561)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54
〈표 4-7〉 조사방법별 장단점.....	56

〈표 4-8〉 표본 추출 방식별 표본 가구 수.....	58
〈표 4-9〉 조사모집단 현황	59
〈표 4-10〉 어촌지역 유형별 규모 분류.....	61
〈표 4-11〉 조사모집단 광역시도별 거주 유형 현황	63
〈표 4-12〉 개별면접 1가구당 소요 비용.....	64
〈표 4-13〉 가구수별 총 조사 비용.....	64
〈표 4-14〉 어촌지역 고용조사 조사항목.....	65
〈표 5-1〉 어촌지역 통계 생산방법의 비교.....	69

〈그림 2-1〉 수산업분류	14
〈그림 3-1〉 경제총조사의 고용관련 통계 조사항목	26
〈그림 3-2〉 전국사업체 조사의 고용통계관련 조사항목	28
〈그림 4-1〉 어촌지역 공간적 범주 예시 : 경북 울진군	45
〈그림 4-2〉 전국사업체 조사를 활용한 통계 생산과정	48
〈그림 4-3〉 전국 어촌지역의 종사자 시도별 분포	53
〈그림 4-4〉 어촌지역 고용통계 구축 개요	55
〈그림 4-5〉 전라남도 집락 추출 결과	60
〈그림 4-6〉 경상남도(해역) 내 시군구 총화추출 결과	61
〈그림 4-7〉 고성군 내 읍면동 집락 추출	62
〈그림 4-8〉 고성군 내 읍면동 총화 추출	62
〈그림 4-9〉 어촌지역 고용통계 조사 절차	66

어촌 지역, 고용지표 개발 서둘러야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31.4%에 해당하는 72개 시·군구이며, 읍면동은 전국 3,538개 읍·면·동 중 15.8%인 560개임

어촌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수산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는 어촌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경기 동향,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함
 - 어촌지역은 과거 1차 산업인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와 수산물가공, 유통은 물론 관광까지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어가의 어업외 소득은 약 1,173만원으로 어업소득 2,309만원의 51% 수준임. 따라서 어촌지역 고용창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역시 어촌지역에서 고용지표 개발이 필요한 이유임
 - 어촌지역과 수산업의 특성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실정임

■ 어촌지역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통계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어촌지역내 고용통계는 각종 어촌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도 필요함

현행 수산업관련 통계, 어촌지역 통계로 활용 곤란

■ 현행 수산업관련 통계 중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통계는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수산업실태조사, 어촌계분류평정표임

- 어업총조사나 어업조사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어촌지역에 있는 가구이기는 하지만,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가 조사대상이므로 비어업인 가구 또는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16년 어업조사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어가 인구중 어가 인구는 11만 6천여 명이고, 이중 제조업 종사자는 1,860명에 불과함

- 수산업실태조사의 경우 지역통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업에 대한 통계로 조사대상은 사업체이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며, 나아가 사업체규모로 층화를 하여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지역통계로 전환되기도 불가능함
- 어촌계분류평정표의 경우 수협에서 어촌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작성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어촌계원 정보만이 있어 활용 불가함

■ 현행 수산업관련 통계를 보완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성하기도 곤란

- 어업총조사를 제외하고는 수산업관련 모든 통계가 표본조사이고, 이들 통계 목적은 지역통계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전국통계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통계에 부적합
- 이러한 이유로 현재 표본통계인 어업조사, 어가경제, 어업생산 통계의 경우 지역별로 시도 단위의 통계 수치는 제공되지만 시군단위의 통계수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타 분야 고용통계,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는 크게 통계청 생산 고용통계와 고용노동부 생산 고용 통계로 분류 가능
 - 통계청 생산 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노동부 생산 통계 : 고용패널 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보험 조사 통계 등

- 고용 통계조사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노동 수요자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로 분류 가능
 - 사업체 대상 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총조사
 - 가구 대상 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패널조사

- 고용통계 조사는 조사시기와 조사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 5년마다 전수조사하며 다른 조사의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전국사업체조사 : 1년마다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다른 조사(수산업실태조사 등)의 표본으로 활용
 -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패널조사 : 1년마다 조사하며 표본조사
 - 경제활동인구총조사 : 매월 표본조사

〈요약 표-1〉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비교

구분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종류	지정통계	지정통계	지정통계
조사목적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매월 노동수요측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조사대상	전국사업체	전국사업체	사업체
조사주기	5년	매년	매월
조사유형	전수	전수	표본
고용관련 주요조사 항목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로 분류하여 성별 구분하고 연간평균급여액	사업체별 고용종사자(성/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자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종사자 지위별/성별 종사자 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자수 변동사유, 소정근로일수 등
통계활용	경제조사, 모집단 추출 경제구조파악	기업경영	노동정책

〈요약 표-2〉 가구대상 고용통계 조사의 비교

구분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 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패널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종류	지정통계	지정통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목적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정책에 활용하고 다른 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파악하여 노동시장분석, 고용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모든 가구	가구	가구	패널 가구
조사주기	5년	매월	1년	1년
조사유형	전수/표본조사	표본	표본	패널조사
고용관련 주요조사 항목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성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근로자부가조사, 비근로자부가조사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직장에 관한 사항	개인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 특성,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통계활용	인구주택 정책 및 타 통계 모집단	경제조사 모집단 추출 경제구조파악	지역 고용정책	가계경제, 개인별 경제활동 일자리, 비

어촌지역 고용통계, 기존통계 가공으로 가능하나 한계

- 내수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어촌지역을 산출할 경우 총 11개 광역시도, 75개 시군구(지방시의 구는 시에 포함), 500개 읍면동¹⁾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 지역임

〈요약 표-3〉 전국 어촌지역 수

광역	시군구		읍면동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11	54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	45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4	12
경기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5	10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6	33
충남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7	44
전북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4	27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6	128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	34
경남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7	81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2	32
합계	-	75	500

- 통계청으로부터 전국사업체 조사의 원시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로부터 어촌지역 읍면동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시 시군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집계해서 분석하여 발표 (대안 1)

- 어촌지역에 대한 유용한 고용통계 정보추출이 가능하나, 전국사업체조사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사업체와 종사자수, 성별 종사자 수, 고용자 지위 등만 조사하므로 조사항목에 한계가 있음

1) 읍면의 출장소 37곳은 해당 읍면에 포함시킴

〈요약 표-4〉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산업분류	사업체(개사)	종사자 (명)
숙박 및 음식점업	476	1,061
제조업	64	976
도매 및 소매업	133	311
;	;	;
합계	779	3,075

〈요약 표-5〉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산업분류	사업체 (개사)	종사자 (명)
제조업	20	111
도매 및 소매업	756	1,690
숙박 및 음식점업	362	1,160
교육 서비스업	78	756
;	;	;
합계	1,849	5,437

〈요약 표-6〉 시군구별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시군구	사업체(개사)	종사자수(명)		
		계	남자	여자
부산 사하구	105	2,096	837	1,259
전남 영광군	421	1,326	589	737
전남 완도군	170	1,271	430	841
전남 해남군	131	1,256	451	805
부산 서구	58	1,251	526	725
경남 고성군	53	1,214	632	582
전남 여수시	69	1,142	466	676
경남 통영시	40	1,127	520	607
;	;	;	;	;
합계	2,885	29,898	11,171	18,727

어촌지역 고용 통계, 가구 패널조사 체계 구축해야

- 고용공급자인 어촌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대안 2).

- 가구패널 조사의 조사개요도는 다음과 같음

〈요약 그림-1〉 어촌지역 고용통계 구축 개요

모집단 및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촌지역의 만 15세 이상 가구 ■ 가구 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
조사 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표본크기	→	■ 6,250가구
조사 비용	→	■ 약 4억 8천만원 ~ 6억원
표본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확률) : 다단계 층화집락 계통추출 ■ 2인(비확률) : 지역별 할당 추출 (직업 고려)
산출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시군구별 고용지표 산출 (시군구 층화 추출) ■ 2인 : 광역별 고용지표 산출 (시군구 집락 추출)
조사 시기	→	■ 2~6월 실사, 7~8월 데이터 처리, 9월 발표
조사 주기	→	■ 매년 실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소득

- 직접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항목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가구일반현황 : 가구원수, 가구원별 성별/연령/학력
 - 고용현황 : 가구원별 직업, 고용현황, 고용종류, 지위, 고용지속기간, 고용 개월, 최저임금 수급여부

- 고용지속여부 : 고용지속의향, 대안
- 기타 각종 어촌지역 현안사항 파악

〈요약 표 -7〉 어촌지역 통계 생산방법의 비교

구분	(대안 1) 기존 통계 가공	(대안 2) 새로운 통계 구축
방법	전국사업체 조사에서 어촌지역의 읍면동 통계 추출	새로운 통계방법 구축
발표범위	75개 시군/ 읍면동 단위	시군단위
조사대상	사업체	가구
조사 유형	전수	표본
시기	1년	월, 분기, 반기, 년 선택가능 * 발표 횟수와 통계비용 비례
조사항목	어촌지역 사업체, 성별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업종별 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등	가구원에 관한 사항(성별, 나이,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 어업유형) 직업, 종사자 수, 취업형태, 임금(최저임금), 종사일 수, 기타 어업시설 만족도 등
비용	초기 - 2억(통계데이터 구축 설계 및 분석) 년간 5,000만원(운영 인건비)	연 1회 조사시 4~6억원
장점	· 비용 절감(경제적 통계) · 기존조사 활용 · 통계조사 발표의 위험 회피 · 과거 통계도 구축가능	· 새로운 통계 · 어촌지역 타켓 통계 가능 · 통계발표 항목 조정 가능 · 독자적 조사 및 통계 발표
단점	· 통계발표 항목 한계(기존통계와 동일) · 시군단위 발표로 어촌지역 의미 퇴색 · 타 기관에 의존 · 발표시기 지연으로 시의성 부족 · 도시거주민 포함 가능성 · 타도시 업체 종사자 배제 가능성 내포	· 과다 비용 발생(비경제적 통계) · 통계조사 발표 위험 발생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제언

■ 어촌지역내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 어촌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와 사업체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지역내 사업체 모집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어촌지역의 산업분류상의 사업체 현황과 종사자를 알면 어촌지역의 경제 및 산업특성을 파악가능하며, 정부정책상 필요할 때마다 샘플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가능

■ 어촌지역 시계열 고용DB 구축

- 통계의 중요한 의미는 횡단면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도 있지만 시계열의 추세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
-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어촌지역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함

■ 수산업·어촌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고용실태 조사 실시

- 현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해 수산업·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에 의해 어촌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됨
- 수산업의 다면화, 어촌지역 관광산업 발달 등을 감안하면 어촌지역의 고용실태 변화는 기본계획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수산업 또는 어촌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법률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어촌지역 고용관련 조사연구 필요

- 최근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최저임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어촌지역의 경우 속성상 일용직이나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종사

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보다는 어촌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어촌지역 고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어촌지역 고용패널 구축 필요

-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는 고용패널을 구축하여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농어촌이 제외되어 있음
- 체계적인 어촌지역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고용실태에 대한 협동 통계조사 및 연구 필요

- 어업인 중에는 농업을 겸업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고용실태에 대한 협동 통계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협동 통계조사는 연안시군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연안시군외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동연구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어촌지역의 일반적 개념은 주로 수산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이다. 어촌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수산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31.4%에 해당하는 72개 시·군구이며,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국 3,538개 읍·면·동 중 15.8%인 560개이다.

어촌지역에서의 고용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어업, 수산가공, 유통 등 수산업 및 관련산업내 고용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어촌지역내 모든 산업이 창출한 고용을 의미한다.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는 어촌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경기 동향,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어촌지역은 과거 1차 산업인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와 수산물 가공, 유통은 물론 관광까지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내의 고용은 어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산 관련제조업, 관광, 숙박 등 서비스업에서도 창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 고용창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촌의 인적 구성이 점차 노령화 되어가면서 청년 및 중년 들의 귀어귀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내 고용 창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어가의 어업외 소득은 약 1,173만원으로 어업소득 2,309만원의 51% 수준인데, 이는 어촌에서도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촌지역 고용통계는 각종 어촌지역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어촌 또는 어항지역 개발정책은 어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촌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어촌 지역 개발 정책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고용통계가 필요하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와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수산업은 물론 어촌지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어촌지역 고용통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어촌지역 고용통계 조사는 없다. 다만 매5년마다 조사되는 어업총조사와 매 1년마다 간이 조사되는 어업조사에서 어업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산업측면에서 그것도 어업에만 국한되어 조사되고 있는 것이므로 고용통계로서는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통계의 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어촌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용지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타 고용관련 통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어촌지역 고용통계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어촌지역 고용통계 집계를 위한 이용 가능한 여타 통계가 부존재시에는 직접적인 조사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개발하여 어촌개발 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사후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촌지역 개발 정책 수립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된 공간적 범위는 법률에서 정의한 어촌지역이다. 다만 내수면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어촌지역은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므로 제외하고 해수면에 인접하고 있는 어촌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분석대상으로 수산업 관련 통계, 고용통계 등을 분석하고 통계 구축은 통계학적 조사방법 구축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어촌지역 고용관련 통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농림)어업총조사
 - (농림)어업조사
 - 수산업실태조사
 - 어촌계 분류평정표
 - 문제점 분석
- 타부처 고용지표 통계 생산사례 분석
 - 통계청 생산 고용통계
 - 고용노동부 고용통계
 - 시사점
- 어촌지역 고용통계 통계 개발
 - 기존통계 가공방안
 - 새로운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 조사 개발(조사목적, 조사방법, 표본, 조사항목, 조사비용 등 통계조사방법 구축)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위주로 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는 고용통계 관련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조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다음으로는 통계청의 원시데이터를 추출 가공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생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 조상방법론을 설계하였다

3) 기대효과

어촌지역 고용 통계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어촌지역 경기 파악
- 어촌지역 고용종사자의 최저임금 파악
- 어촌지역 고용계획 수립
- 어촌지역 개발 정책에 활용
- 어촌지역 정책 사후평가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어촌지역의 고용실태 파악을 통한 어촌 정책 개발에 활용
- 횡단면 또는 시계열간 분석을 통한 지역 또는 시기별 경기동향 분석
-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2장

어촌지역 고용 통계와 문제점 <<

1. 어촌지역 고용관련 통계 현황

1) 어업총조사

(1) 조사 개요

어업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총조사이다. 어업총조사는 1970년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2000년 통계청 이관이후 농어업총조사로 2010년 이후에는 농림어업총조사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최근 조사는 2015년에 이루어졌다. 어업총조사의 작성은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정통계이며 전수조사이다.

어업총조사의 조사 목적은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어가구로 지난 1년간(2014. 12. 1. ~ 2015. 11. 30.)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로 지난 1년간(2014. 12. 1. ~ 2015.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거나 2015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근해와 연안바다인 해수지역에서 종사하는 해수면어가와 강, 호수, 댐, 저수지 등 담수(淡水)지역과 강물이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기수(汽水)지역에서 종사하는 어업을 하는 내수면어가가 대상이다. 어가는 전업어가와 겸업어가 모두 포함하는데 겸업어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어업 외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가 대상이다. 겸업어가는 겸업수입이 어업수입보다 적은 경우 제1종 겸업어가라 하며, 겸업수입이 어업수입보다 많은 경우 제2종 겸업어가로 분리된다.

조사는 조사기준년도(0.5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익년 10월에 공표되며 공표범위는 동·읍·면이다.

〈표 2-1〉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구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승인	1962-06-01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목적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각종 학술연구 자료 제공
작성기관	통계청 농·어업 통계과
통계활용	농림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범위	대한민국 영역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조사대상지역	전국
조사단위	가구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 농가임가, 해수면 어가, 내수면 어가, 지역조사 4종 130개 항목 - 농림어업공통(20개 항목) : 가구원 사항, 경영주 특성, 생활여건, 생산자조직 참여, 기타 등 - 농업부문(24개 항목) : 가구원, 농업경영, 농업생산 등 - 임업부문(7개 항목) : 임업생산 및 경영 등 - 어업부문(10개 항목) : 가구원, 어업경영, 어업생산 등 - 지역조사표(19개 항목) : 읍면소재지, 지리조건 등, 농어촌 시설, 경제활동조직, 도농 교류, 정보화, 쓰레기 처리, 논벼 관리 등
조사기간/주기	조사기준년도(0.5자년도) 12월1일~12월15일/ 5년
공표주기	5년
자료수집방법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사
조사체계	조사원→읍면동→시군구→ 시도→통계청

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 Popup.do? confmNo=101041>), 2017

(2) 고용관련 조사내용

어업총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가 조사 대상이며, 조사 대상 어가의 가구원의 관한 조사사항 중 고용관련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종사기간, 어업종사형태, 종사한 어업종류, 어업의 종사기간, 주종사분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어업총조사의 고용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통계시스템(KOSIS)를 통해서 제공된다. <표 2-3>은 통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어업총조사의 주종사분야의 통계이다.

〈표 2-2〉 어업총조사의 고용관련 통계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종사기간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어업종사형태	① 자기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종사한 어업종류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어업의 종사기간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주종사 분야	① 어업 ② 낚시 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 2015

〈표 2-3〉 어업총조사 주종사분야(2015)

구분	어로어업	전업	겸업	계
어업총사가구원:남자(명)	34,863	15,415	33,498	48,913
여자(명)	30,172	10,949	30,282	41,231
어업:남자(명)	24,976	15,415	21,041	36,456
여자(명)	19,010	10,949	16,404	27,353
낚시안내업:남자(명)	252	-	272	272
여자(명)	60	-	69	69
농업:남자(명)	6,746	-	8,780	8,780
여자(명)	8,467	-	10,778	10,778
제조업:남자(명)	166	-	211	211
여자(명)	92	-	128	128
건설업:남자(명)	328	-	382	382
여자(명)	30	-	34	34
도매업·소매업:남자(명)	262	-	311	311
여자(명)	347	-	403	403
숙박업·음식업:남자(명)	654	-	732	732
여자(명)	1,085	-	1,202	1,202
기타산업:남자(명)	1,479	-	1,769	1,769
여자(명)	1,081	-	1,264	1,26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2) 어업조사

(1) 조사 개요

어업조사는 어업총조사 대신 매년 실시되는 간이 조사이다. 1948년 어업조사(전수조사)로 최초 실시 되었으며, 1971년 표본조사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11년 부터는 농업, 임업조사와 함께 농림어업조사로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총조사는 1868년에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어업조사는 어업총조사와 달리 해수면 어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2-4〉 (농림)어업조사 개요

구분	(농림)어업조사
통계 승인	1968-04-18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목적	전국의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농산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기관	통계청 농·어업 통계과
통계활용	농림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범위	조사단위 : 가구
조사대상지역	전국
조사단위	가구 - 어가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10) : 성명, 경영주(관계, 경력), 세는나이(띠, 생일), 성별, 국적(현재, 출생, 입국), 혼인상태, 어업 종사기간, 어업 종사형태, 어업 이외 종사기간, 주 종사분야(산업, 직업) · 어업경영(8) : 어선현황(동력여부, 재질, 톤수, 건조년도, 연간출어일수, 평균승선인원), 어로어업(종류, 품종), 양식어업(품종, 방법, 면적), 어업형태, 판매금액, 판매처, 어업관련사업, 전·겸업구분 · 기타가구(1) :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삭제) 생활비 원천
조사기간/주기	1년
공표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통계정보보고서, 2015.12

어업조사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목적은 전국의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농산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단위는 가구 단위로 960개 표본주사구내 5,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시점 기준 년도는 전년 12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다. 공표주기는 1년이며 공표시기는 조사 익년도 4월이다.

조사대상 어가의 정의는 어업총조사와 동일하다. 어업조사와 어업총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업총조사가 전수조사인데 반해 어업조사는 표본 조사이다. 어업조사는 어업총조사가 실시된 직 후 표본 개편이 이루어진다. 목표모집단은

2015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가 8,541조사구이다. 표본추출은 조사 모집단의 어가수 규모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통합하여 어가수가 균질하게 되도록 구축한 8,541조사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이며, 추출단위는 조사구이다. 표본배분은 네이만 배분에 의한 층별 배정을 한다.

$$n = \frac{(\sum_{h=1}^L N_h S_h)^2}{CV^2 Y^2 + \sum_{h=1}^L N_h S_h^2}$$

단, · h : 층

- N_h : 모집단의 h 층의 크기
- S_h^2 : h 층의 모분산
- CV : 모집단 총합에 대한 지정된 변동계수
- Y : 모집단 총합
- a_h : h 층에 할당된 표본비율

(2) 고용관련 조사내용

어업조사는 어업총조사의 간이 조사인만큼 고용관련 조사내용은 어업총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조사대상 어가의 가구원의 관한 조사사항 중 고용관련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종사기간, 어업종사형태, 종사한 어업종류, 어업외 종사기간, 주종사분야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항목 주종사 분야를 산업과 직업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산업은 어업총조사의 조사내용과 동일하지만 직업은 어업숙련직, 농축산숙련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기계조립, 조작, 단순노무직,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6년 어업총조사 분야 통계청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어가인구는 116,887명인데, 이중 72,019명이 어업, 농업은 14,487명, 숙박음식업이 4,069명 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5〉 어업조사 고용관련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종사기간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어업종사형태	① 자기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종사한 어업종류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어업의 종사기간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주종사 분야 (1) 산업	① 어업 ② 낚시 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주종사 분야 (2) 산업	① 어업숙련직 ② 농축산숙련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판매직 ⑤ 기능·기계조립·조작·단순노무직 ⑥ 기타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통계정보보고서, 2015.12

〈표 2-6〉 어업조사 주종사분야(2016)

주종사분야별	2016		
	15세 이상 어가인구	남자	여자
계	116,887	58,421	58,466
어업	72,019	39,444	32,576
낚시안내업	114	78	36
농업	13,487	6,055	7,432
제조업	1,860	1,195	665
건설업	1,064	1,017	47
도,소매업	2,542	842	1,701
숙박, 음식업	4,069	761	3,308
기타산업	7,198	3,947	3,250
종사안함(가사, 학생, 무직 등)	14,533	5,082	9,45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3)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1) 조사개요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는 2004년에 승인된 일반통계이다.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실시가 의무화되었다. 2004년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조사가 되었으나 2013년 농촌진흥청에 이관되어 농촌생활지표 조사와 통합되어 조사되고 있다. 조사체계는 대상가구→실사기관(용역)→농촌진흥청이다.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의 조사목적은 어촌의 복지, 교육여건 및 지역개발에 관한 기초실태를 조사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전국 368개 표본조사구이며, 조사대상 범위는 조사대상 표본가구내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368개 표본조사구의 4,100개 표본가구이다. 조사대상 가구는 응답율을 고려하여 농어촌 2,764가구, 도시 1,149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의료(11개), 복지(17), 교육(8개), 문화여가(3개), 기초생활여건(22개), 환경경관(3개), 지역역량(7개), 경제활동(6개), 일반사항(10개) 이다.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는 매년9월1일 기준으로 9.25~10.25 한달간 조사되며 공표주기는 매 1년단위로 공표된다. 모집단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동읍면, 2차로 조사구, 3차로 가구가 출된다. 표본추출은 1차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층화하고, 2차 층화는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분류하며, 3차층화는 아파트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층화하게 된다.

(2) 고용관련 조사내용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고용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들의 직업 및 종사자 지위만을 조사한다.

〈표 2-7〉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고용관련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직업	주관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자 지위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 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2017

직업은 선택형이 아니라 가구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종사자의 지위는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표 2-8〉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고용 관련조사 결과표

구분	2016					
	사례수 (명)	자영업자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 봉사자 (%)
합계	2,344	53.5	26.4	5.1	4.4	10.6
읍	843	43.1	43.4	3.3	5.6	4.6
면	1,501	59.3	16.9	6.1	3.7	14
농어가	1,129	69.3	7	2.3	2.3	19
비농어가	1,215	38.8	44.4	7.6	6.3	2.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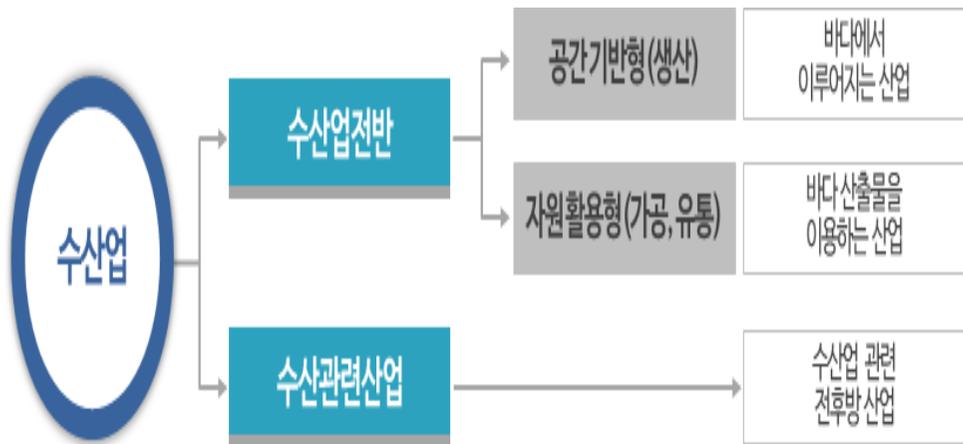
4) 수산업실태조사

(1) 통계 개요

수산업실태조사는 2016년에 승인된 일반통계이다. 2015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수산업특수분류가 2015년에 새로이 제정되었다. 수산업실태조사는 수산업특수분류체계에 따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수산업특수분류는 산업 명칭

으로 사용되는 수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산업 정의 및 분류체계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 지원 및 통계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수산업특수분류는 2개 대분류, 8개 중분류, 26개 소분류, 60개 세분류, 90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표 2-9〉 참조).

〈그림 2-1〉 수산업분류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표 2-9〉 수산업 특수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수산업전반	수산물생산업	4	7	12
	수산물가공업	3	4	8
	수산물유통업	2	8	12
	수산여가 관련 서비스업	2	3	3
수산관련산업	어선 및 낚시 선박 건조업	2	3	6
	수산 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4	13	15
	어선, 낚시 선박 및 수산기자재 유통업	2	5	10
	수산관련서비스	5	17	24
2개	8개	24개	60개	90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수산업실태조사는 2016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이며 리서치회사에 의해 조사된다. 수산업실태조사의 작성목적은 수산업의 산업 규모, 생산구조, 운영형태, 경영수지, 고용형태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수산정책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업관련사업체중 8,000개를 표본추출하여 업종, 매출액, 종사자 수, 수출입액, 경영전망 등 총 38개 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수산업실태조사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6.8.1. ~ 10.31 간의 조사를 거쳐 2017.4.에 공표되었다. 조사주기는 1년 단위이며, 기준시점은 조사전년도 12.31. 기준이며, 공표시기는 익년도 4월이다.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 공표단위는 중분류까지 발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수산업관련사업체 중에서 종사자 수, 매출액 수로 층화하여 샘플링하여 추출한다.

(2) 고용관련 통계

수산업실태조사에서 고용관련 통계는 수산업 특수분류상의 90개 세부 업종별 고용실태조사이다. 90개 세부업종에 대하여 성별 종사자 수, 고용상태별 종사자 수, 학력별 종사자 수, 연령별 종사자 수, 종사자 지위, 외국인 종사자 수, 종사자 평균임금, 평균 고용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성별종사자 수는 남성과 여성, 고용상태별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학력별 종사자 수는 고등학교,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연령별 종사자 수는 20세미만, 만 20대, 만 30대, 만 40대, 만 50대, 만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어업종사형태는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도 남의 어업에 종사 등을 조사한다. 외국인 고용자를 남자, 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종사자평균임금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평균임금 등을 조사한다.

〈표 2-10〉 수산업 특수분류 산업 상세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수산업	11 수산물 생산업	111 어로 어업	1111 해면 어업	11111 원양 어업	
			1112 해면 어업	11112 근해 어업	
			1113 해면 어업	11113 연안 어업	
			1114 내수면 어업	11120 내수면 어업	
		112 양식 어업	1121 해면 양식어업	11211 해면 양식 어업	
			1122 해면 양식어업	11212 해면 종묘 생산업	
			1123 내수면 양식어업	11221 내수면 양식 어업	
			1124 내수면 양식어업	11222 내수면 종묘 생산업	
		1125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어업	11230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어업		
		113 어업 관련 서비스업	11301 어업 관련 서비스업	11301 어획물 운반업	
			11302 어업 관련 서비스업	11302 기타 어업 관련 서비스업	
		114 소금 채취업	11400 소금 채취업	11400 소금 채취업	
	12 수산물 가공업	121 수산 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11 수산 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111 수산 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2112 수산 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2113 수산 동물 냉동품 제조업	
				12114 기타 수산 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115 동물성유지 제조업		
		1212 수산 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120 수산 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2 기타 수산물 가공업	12200 기타 수산물 가공업			
	123 소금 가공업	12300 소금 가공업			
	13 수산물 유통업	131 수산물 판매업	1311 수산 식품 중개업	13110 수산 식품 중개업	
				1312 수산물 도소매업	13121 수산물 도매업
					13122 수산물 무역업
			13123 수산물 소매업		
			1313 수산물 가공품 도매업	13131 수산물 가공 식품 도매업	
				13132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매업	
			1314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13141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매업	
		13142 관상용 수산 동식물 소매업			
		1315 수산물 전자상거래업		13150 수산물 전자상거래업	
		132 수산물 운송 보관업	1321 수산물 육상 운송업	13210 수산물 육상 운송업	
	1322 수산물 해상 운송업		13220 수산물 해상 운송업		
	1323 수산물 냉장 및 냉동 창고업		13230 수산물 냉장 및 냉동 창고업		
	14 수산 여가관련 서비스업	141 낚시업	1411 낚시터 운영업	14110 낚시터 운영업	
			1412 낚시 선박업	14120 낚시 선박업	
		142 기타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21 기타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210 기타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22 기타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220 기타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	수산 관련 산업	21 어선 및 낙시선박건 조업	211 어선 및 낙시 선박 건조업	2111	어선 건조업	21111	철강제 어선 건조업	
						21112	합성수지제 어선 건조업	
						21113	목재 어선 건조업	
						21114	기타 어선 건조업	
				2112	낙시선박 건조업	21120	낙시선박 건조업	
			212 어선 및 낙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120	어선 및 낙시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1200	어선 및 낙시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2 수산 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221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	2211	어구 제조업	22111	어업용 끈 및 로프 제조업	
						22112	어망 제조업	
						22113	기타 어구 제조업	
						2212	어업용 상자 제조업	22120
	2213					어업용 얼음 제조업	22130	어업용 얼음 제조업
	2214					어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2140	어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22 양식용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		2221	양식용 사료 제조업	22210	양식용 사료 제조업		
					2222	양식장 시설 설치업	22220	양식장 시설 설치업
					2223	양식용 의약품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2230	양식용 의약품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224	양식장 시설 및 장비 제조업	22240	양식장 시설 및 장비 생산업
					2225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용품 제조업	22250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용품 제조업
	223 수산물 가공기계 및 포장재 제조업		2231	수산 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22310	수산 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2232	수산물 포장재 및 용기 제조업	22320	수산물 포장재 및 용기 제조업
	224 낙시업용 기자재 제조 및 미끼 생산업	2241	낙시업용 용구 제조업	22410	낙시업용 용구 제조업			
				2242	낙시업용 미끼 생산업	22420	낙시업용 미끼 생산업	
	23 어선, 낙시 선박 및 수산 기자재 유통업	231 어선, 낙시선박 및 구성 부분품 중개 및 도매업	2310	어선, 낙시선박 및 구성 부분품 중개 및 도매업	23101	어선, 낙시선박 중개 및 도매업		
					23102	어선 및 낙시선박 구성 부분품 도매업		
232 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2321	어업용 기자재 도소매업	어업용 기자재 도소매업	23210	어업용 기자재 도소매업		
					23221	양식용 사료 도매업		
					23222	양식용 의약품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		
					23223	양식장 시설 및 장비 도매업		
					23224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용품 도소매업		
					23230	수산식품 가공 기계 도매업		
					23241	낙시업용 기자재 도매업		
					23242	낙시업용 기자재 도매업		

18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4	수산 관련 서비스업	241 수산 관련 수리, 환경 정화 및 전문 서비스업	2411 어선, 낚시선박 및 어구 수리업	24110 어선, 낚시선박 및 어구 수리업	
			2412 어장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4120 어장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413 어업 관련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24131	어장 축양업
				24132	수산 생물 진료업
				24133	어선 및 낚시선박 안전도 검사
				24134	수산 컨설팅업
		242 수산업 인력 고용 및 공급업	2421 수산업 인력 고용 알선업	24210 수산업 인력 고용 알선업	
			2422 수산업 인력 공급업	24220 수산업 인력 공급업	
		243 수산업 단체	2431 수산업 경영자 단체	24310 수산업 경영자 단체	
			2432 수산업 관련 노동조합 단체	24320 수산업 관련 노동조합 단체	
			2433 수산업 전문가 단체	24330 수산업 전문가 단체	
		244 수산 행정	2441 수산 지방행정	24410 수산 지방행정	
			2442 수산 중앙행정	24420 수산 중앙행정	
		245 수산교육 및 연구개발업	2451 수산 교육기관	24511	수산고등학교
				24512	수산전문대학
				24513	수산대학
				24514	수산대학원
			2452 수산 훈련기관	24520 수산 훈련기관	
			2453 수산 연구개발업	24531	수산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4532		수산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업	
		246 수산 금융업	2461 수산 은행업	24610 수산 은행업	
			2462 수산 관련 보험업	24620 수산 관련 보험업	
		247 수산 음식점업	2471 수산 일식 음식점업	24710 수산 일식 음식점업	
			2472 수산 한식 음식점업	24720 수산 한식 음식점업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표 2-11〉 수산업실태조사 고용관련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성별 종사자 수	남성/ 여성
고용상태별종사자 수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학력별종사자수	고등학교,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연령별종사자수	20세미만, 만20대,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세 이상
어업종사형태	①자기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도 남의 어업에 종사
외국인종사자수	남자, 여자
종사자 평균임금	성별, 연령별, 학력별 평균임금
평균고용기간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 이상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표 2-12〉 수산업실태조사 고용관련 조사결과

구분	2015					
	계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907,344	126,925	73,449	283,968	413,605	9,397
수산업	681,434	89,006	51,763	151,393	381,109	8,164
수산관련산업	225,910	37,920	21,686	132,575	32,497	1,233
수산물 생산업	486,375	45,766	30,484	46,280	356,359	7,485
수산물 가공업	62,726	3,823	2,121	43,803	12,853	126
수산물 유통업	128,650	37,744	18,117	61,033	11,451	305
수산여가관련 서비스업	3,683	1,672	1,040	277	445	249
어선 및 낚시 선박 건조업	75,989	4,672	543	65,640	5,133	1
수산 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9,120	829	242	7,740	302	8
어선, 낚시선박 및 수산기자재 유통업	7,063	3,255	1,373	2,167	265	3
수산관련 서비스업	133,739	29,165	19,528	57,028	26,797	1,22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4)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1) 조사 개요

어촌계분류평정표 및 현황은 1981년부터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어촌계를 종사유형별, 입지유형별, 발전수준별로 분류 평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각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조사서(설문)을 토대로 작성한다.

조사대상은 2,029개 어촌계(2016년 12월말 기준)이며, 종사유형, 입지유형 등은 어촌계장에 의해 분류되지만 발전수준은 평정요목(소득수준, 생산기반 등 6개 부문 17개 항목) 기준으로 어촌계별 점수에 의한 평정을 한다. 어촌계의 분류 및 평정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사유형별은 어선어업형, 양식어업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입지유형별은 도시근교형, 취약지구형, 연안촌락형으로 구분된다. 발전수준별 유형은 복지, 자립, 성장 어촌계 등으로 구분된다. 평가부문별로 배점을 정하고 평점으로 판정을 하는데 평정득점 80점 이상 어촌계는 복지어촌계, 70점이상 80점 미만 어촌계는 자립어촌계, 평정득점 70점 미만 어촌계는 성장 어촌계로 구분된다.

평점에 반영되는 조사항목은 소득수준(호당평균소득), 생산기반(어선세력, 면허어장 점유율, 면허어장 및 어선세력), 공동시설, 자금자립도(조합원 출자공동기금 조성), 조직관리 및 협동심(어촌계 가입율, 생산물 판매실적, 공동분배), 공동어장 관리(자율관리 공동체 참여, 종묘방류, 불가사리 구제, 푸른바다 가꾸기), 후생복지(정보화시설, 민박, 1사1촌 자매결연, 어촌체험관광, 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하게 된다.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복지어촌계는 170개, 자립어촌계는 737개, 성장어촌계는 1,121개이다.

(2) 고용관련 통계

어촌계분류평정표는 어촌계의 계원에 대한 현황자료이므로 사실상 고용통계로 보기 어렵다. 다만 각 어촌계의 계원들에 대한 전업, 겸업, 피용계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종사유형만을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어촌계분류평정표에서 조사된 어촌계원은 132,990명으로 이중 전업계원이 53,833명이고 겸업은 76,045명, 피용은 3,112명이며, 준계원은 14,55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촌지역 고용통계는 어촌지역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 또는 수산업종사자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어촌지역 고용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수산정책이 주로 수산업이라는 산업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업총조사나 어업조사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어촌지역에 있는 가구이기는 하지만,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가 조사대상이므로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어업인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의 수산업외 타산업에 대한 고용통계는 과소 집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2016년 어업조사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어가 인구는 116,787명인데 이중 어업외 타산업에 종사하는 고용통계를 보면 낚시안내업은 114명, 농업은 13,487명, 제조업업 1,860명, 도소매업 2,54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업총조사나 어업조사의 고용관련 통계가 어촌지역 고용통계로 활용될 수 없다.

한편 수산업실태조사의 경우 지역통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업에 대한 통계이다. 수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수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추출은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국사업체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읍면동단위가 제공되지만, 수산업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이고 표본추출을 사업체규모로 층화를 하기 때문에 지역통계로 전환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표본추출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별 고용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어촌계분류평정표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수협에서 어촌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여기는 지역별로 어촌계 정보가 있어서 지역별 통계로는 유용하다. 그러나 어촌계분류평정표에 담겨져 있는 고용관련 정보가 적기 때문

에 어촌지역 고용통계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결국 현행 수산업관련 통계로는 어촌지역 고용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현행 수산관련 통계조사를 보완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산출하기도 곤란하다. 그러한 이유는 어업총조사를 제외하고는 수산관련 모든 통계가 표본조사 통계이기 때문이다. 어업조사, 어가경제, 어업생산 통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지만, 표본산출이 지역통계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전국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통계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재 표본통계인 어업조사, 어가경제, 어업생산 통계의 경우 지역별로 시도 단위의 통계수치는 제공되지만 시군단위의 통계수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 통계에 고용관련 설문문항을 추가하여도 지역별로 통계의 상대적 편의가 커지므로 모수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전국단위로 조사되는 고용관련 통계를 가공하거나 어촌지역의 고용통계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 고용관련 통계 분석과 시사점

1. 고용 통계 개요

1) 정의

고용통계는 일정시점의 경제주체인 기업 또는 가계의 고용활동과 관련된 통계이다. 고용통계는 노동통계의 일종인데, 노동통계는 주어진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활동들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통계는 근본적으로 노동현상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통계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노동통계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통계는 따라서 노동통계와 및 그에 따른 임금통계가 핵심적인 통계가 된다.

고용통계 작성이유는 고용실태와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통계 작성을 통하여 정부의 고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가능해지고 이를 통하여 각종 고용관련 제도 및 법률 재개정 및 보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가계, 기업 등의 경제주체 들이 합리적인 고용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고용통계는 가계 기업들의 합리적인 고용관련 의사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2) 고용통계의 종류

고용통계는 조사방법, 조사주체, 조사대상, 조사유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조사방법에 의한 고용통계는 조사통계(survey statistics)와 행정통계(administrativ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통계는 조사대상자에 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이다. 경제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통계, 한국고용패널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행정통계는 정부의 행정업무에 의해 수집되는 통계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고용보험통계이다.

조사주체에 의한 분류는 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의한 분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대부분 통계전담부처인 통계청과 고용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생산된다. 경제총조사, 사업체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은 통계청에서 생산되며, 한국고용패널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생산된다.

조사대상자에 의한 분류는 고용통계 정보의 출처에 의한 분류이다. 고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을 공급하는 가계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고용통계의 수집은 노동을 공급하는 가계(가구나 개인)나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구를 대상으로 고용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노동 공급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총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이다.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 분류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분류된다.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비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통상 조사주기가 길거나 조사항목이 적게 된다. 매5년마다 조사하는 경제총조사, 인구총조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의 샘플을 추출하는 틀로 사용하게 된다. 고용통계 중 전수조사이면서도 매년 작성되는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항목이 경제총조사보다 적다. 표본통계를 하는 고용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이다.

〈표 3-1〉 사업체 또는 가구별 고용통계조사 현황

조사 단위	명칭	작성기관	조사유형	주기
사업체	경제총조사	통계청	전수	5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전수	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표본	매월
가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전수	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표본	매월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표본	반기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표본 (패널)	1년

2.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조사 현황

1)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는 2010년에 승인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이다. 2011년에 제1차 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매 5년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도인 1차 및 6차년도에 실시한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사업체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을 제공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다. 또한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제공하는 소지역 단위 통계조사이기도 하다.

경제총조사의 결과는 중 국가기본통계 작성 및 국가정책 수립,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민계정 기준편 개편 작업과 IO표 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을 제공한다.

〈표 3-2〉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현황

관련조사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	모집단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모집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모집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모집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년 실측 산업연관표	기준년 개편	한국은행
도시정책지표조사	모집단	17개 지방자치단체
저작권산업실태조사	모집단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산업통계조사	모집단	환경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준년 개편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홈페이지(<https://www.ecensus.go.kr/home/index.html>).2017.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이며, 조사기준일은 0자, 5자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다. 조사기간은 6월에 준비조사기간 4일 거쳐 24일간 인터넷조사와 30일간 방문조사를 혼용한다. 결과는 조사년도 12월에 잠정결과치를 익년도 7월에 확정결과 발표를 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인터넷 조사를 통해 사업체가 직접 응답할 수도 있다. 조사체계는 사업체 → 지방통계청 조사원 → 지방통계청 조사관리자 → 지방통계청 총관리자 → 통계청이다.

(2) 고용관련 조사항목

경제총조사의 조사항목은 공통항목(16개)와 특성항목(25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업종별로 조사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고용관련 통계조사 항목은 공통된 조사항목으로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다 종사자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로 분류하여 성별 구분하고 연간평균급여액을 적게 된다. 특성항목 조사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한하여 연구기술직 종사수를 별도로 조사를 한다. 이는 연구기술인력 실태파악 및 수급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림 3-1〉 경제총조사의 고용관련 통계 조사항목

⑤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 종사자 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입함. 단,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계절별로 변동이 큰 경우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함 → 연간 급여액은 각종 세금 공제 이전 급여총액으로서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제외									
	(1) 12월 말 종사자 수 (명)					(2) 연간 급여액 (백만 원)				
	⑦ 남	⑧ 여	⑨ 소계 (⑦+⑧)	⑩ 조	⑪ 천	⑫ 백	⑬ 십	⑭ 억	⑮ 천	⑯ 백만
① 상 용 근 로 자										
② 임 시 및 일 용 근 로 자										
③ 기 타 종 사 자				*	*	*	*	*	*	*
합 계 (① + ... + ③)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홈페이지(<https://www.ecensus.go.kr/home/index.html>).2017.

2) 전국사업체 조사

(1) 조사개요

전국사업체조사는 1994년에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1995년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처음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작성되다가 2008년 전국사업체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사는 통계청 경제통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3-3〉 전국사업체 조사 개요

통계 승인	1995-12-22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목적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등
작성기관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통계활용	기업경영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범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대상지역	전국
조사단위	사업체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조사기간/주기	2016. 6.13~7.22/ 1년
공표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체계	사업체→시·군·구→시·도→통계청

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홈페이지(<http://www.narastat.kr/meta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37>), 2017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목적은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범위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업무는 사업체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통계청 순이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공표주기도 1년이다., 조사기간은 매년 6~7월이며 조사 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조사기준시점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 고용통계 관련 조사항목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이다. 이중 종사자 수는 성별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이며, 임금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림 3-2〉 전국사업체 조사의 고용통계관련 조사항목

단위 : 명

8.종사자수	- 사업체의 2014. 12. 31 기준 종사자수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합 계
	※ 본사의 지사 영업소 종사자는 제외		남					
		여						
		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표」, 2015

3) 사업체 노동력조사

(1) 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968년에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승인당시에는 「노동이동조사」였으나, 2008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로 변경하였고, 2011.1.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고 조사주기도 분기에서 월단위로 변경되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조사목적은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유형은 조사통계이다. 조사대상범위는 고용부문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기관 포함)이며, 근로실태부문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기관 제외)가 된다.

조사단위를 보면 고용부문은 24,9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조사를 하며, 근로실태부문은 13,02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별조사, 지역별근로실태부문 1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월에 조사를 한다. 근로실태부문 통계작성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목표모집단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이며, 표본추출틀 역시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이다. 표본설계는 네이만 배정에 의하 층화계통출하방법에 의해 추출되고 있다.

(2) 고용통계 관련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크게 사업체 현황,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사업체 현황에서는 사업체 명칭, 경영형태, 사업체형태, 소재지, 주요 생산품명, 종사자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종사상 지위별/성별 종사자 수 등이 조사된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서는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자수 변동 사유,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하지 않은 일수, 휴일근로일수, 소정근

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시간 변동사유, 임금총액, 정액/초과/특별급여, 고정 상여금, 임금변동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3. 가구대상 고용통계

1) 인구총조사

(1) 조사개요

인구총조사는 1962년에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지정통계로 승인되기 이전인 1925년에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인구주택총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구총조사의 조사목적은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유형은 조사통계이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혼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수부문은 13개기관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표본부문은 인터넷조사, 조사원 방문면접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된다. 조사대상단위는 가구이다. 조사주기와 공표주기는 모두 5년이다. 면접조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체계는 전수조사의 경우 공공기관 및 사업기관→통계청이며, 표본조사의 경우 조사원 → 동·읍·면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으로 조사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2015년도에 총 41개(전수 7개, 표본 34개)이다. 전수조사는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연월, 본관 등이며, 표본조사는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종교, 교육 정도, 전공 계열,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아동 보육, 활동 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경

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혼인 상태, 혼인 연월, 출산 자녀 수, 자녀 출산 시기, 추가 계획 자녀 수,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 단절, 사회 활동,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이다.

고용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여부, 지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직장 업체명, 직책 및 부서, 현직업 근무연수, 근로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

2) 경제활동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총조사는 1962년에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1957년에 노동력조사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되었으나 승인통계로는 1963년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총조사의 조사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유형은 조사통계이며, 조사대상 범위는 개인이고 대상 지역은 전국이다. 조사대상규모는 전국 3만3천 가구이다. 조사주기 및 공표주기는 매월이며 조사기간은 15일 포함된 다음주 1주간이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 비대면면접조사(전화, 문자) 비대면면접조사(e-mail), 비대면면접조사(기타)를 혼용하고 있다.

목표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이다. 표본설계는 구조조사구는 층화 3단 집락추출을 하는 데, 1단은 지역층별 표본 광역조사구를 대상으로 계통추출, 2단은 재추출된 광역조사구 내 일반조사구 확률비례추출, 3단은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표본 가구(20가구) 단순임의추출을 하게 된다. 신조사구는 층화 2단 집락추출을 하는데 1단은 지역층별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을 2단은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표본 가구(20가구) 단순임의추출을 한다.

(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성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이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성/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규모, 연령/산업/직업별/비정규직 근로 규모이며, 근로형태별로 평균근속기간, 월평균임금,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주40시간실시비율, 임금형태별 /근로자 형태별 유연근무자 활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표 3-4〉 경제활동인구총조사 개요

구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승인	1962-06-01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작성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통계활용	고용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범위	개인
조사대상지역	전국
조사단위	개인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형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삭제: 주40시간 근로제, 근로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추가: 첫 일자리 임금(수입) 구간 조사 ○ 고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세분화: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 - 항목 추가: 가장 오랜 일자리의 산업 조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항목 ○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조정: 사업 시작동기, 업종전환사유, 일자리 그만두려는 이유
조사기간/주기	15일 포함된 다음주 1주간/ 월
공표주기	월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자료: 통계청, 통계실명자료홈페이지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04>), 2016

청년층 부가조사로는 연령층 수락여부, 연령별 경제활동여부, 졸업/중퇴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취업분포, 직업교육 경험유무, 성별 첫일자리 산업 및 직업, 월평균임금, 그만둔 사유, 최종학교 전공이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고령층 부가 조사는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산업별 직업별 취업분포, 구직경험, 성별 일자리 선택기준, 장래 희망임금 수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표 3-5〉경제활동인구총조사 고용관련 조사항목

조사항목	내용
일에 관한 사항	근로종사여부, 무보수 근로 여부, 직장 여부, 주된일 이외의 일, 주당 일한시간, 실제 일한 시간, 36시간 미만 또는 이상 일한 이유, 더 많은 일을 하기위한 구직노력, 직장명, 직장이 하는 일, 직장내 종사자 수, 한일, 직명, 직장에서의 지위, 근무년수, 고용계약 여부
구직에 관한 사항	이전 4주내 구직여부, 지난1주내 직장취업가능여부, 구직경로, 구직활동개월 수
기타활동	일을 하고 싶었는지 여부, 지난1주내 직장취업가능여부, 4주내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지난 1년동안 구직활동업, 지난주에 주로 한일
이전직장에 관한 사항	이전에 일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만 둔 시기 직장을 그만 둔 이유, 전 직장 명 및 업종, 이전 직장 종사자 수, 이전직장에서 한일, 지위
추가무급 가족일에 관한 사항	무급 가족 일 수행여부, 평소 1주 동안 일한 시간, 실제 일한 시간, 36시간 미만 또는 이상으로 한 이유, 일의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지 여부, 구직여부, 지난주 일한 사업체, 직장, 직무 및 직위 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조사표」, 2016

3) 지역별 고용조사

(1) 통계 개요

지역별고용조사는 2006년 승인된 지정통계이다. 2006년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 인력실태조사를 시군구고용통계조사로 변경하였고 다시 지역별 고용조사로 변경하였다. 2010년 연간조사에서 분기조사로 변경하였고, 2013년 반기별 조사로 변경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목적은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다. 통계 활용 분야는 고용분야이다.

〈표 3-6〉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구분	지역별고용조사
통계 승인	2006-08-03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목적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작성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통계활용	고용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범위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조사대상지역	전국
조사단위	개인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6) : ①성명 ②가구주와의 관계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교육정도(전공학과, 졸업년도*) ⑥혼인상태 ○ 일에 관한 사항(15) : ①수입 있는 일 여부 ②무급가족 일 여부 ③일시휴직 여부 ④다른 일 여부 ⑤취업시간 ⑥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⑦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⑧종사상지위 ⑨현 직장 취업 시기 ⑩고용계약기간 ⑪3개월 평균임금 ⑫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주당 취업시간 ⑬이직횟수(이전직장 사업체 소재지) ⑭이직사유 ⑮ 비동거사유 ○ 구직에 관한 사항(4) : ①구직활동여부 ②취업가능성 ③구직경로 및 방법 ④구직기간 ○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4) : ①취업희망여부 ②비구직 사유 ③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④주된 활동상태 ○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5) :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④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⑤종사상지위
조사기간/주기	조사 대상기간 다음주부터 2주간/ 반기
공표주기	반기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대상범위는 조사대상기준으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이다. 다만 현익군인, 사회복지무원, 교도소 수감자 의무 경찰 등은 제외된다. 조사대상 규모는 개인으로 9,949개 조사구의 약 199,000가구(약 32,000가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약167,000가구*를 별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이다.

조사대상기간은 4, 10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간이며, 조사기간은 조사대상기간 다음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조사주기는 반기이다. 자료수집방법은 면접조사이며 조사체계는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순이다.

(2) 표본설계

지역별고용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며,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다.

지역별고용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조사하기 매우 곤란한 기숙시설(3), 특수사회시설(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5) 조사구는 제외하였다. 2차 추출틀은 1차 추출틀에서 사용한 9,949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설계는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로 확률비례계통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구에서 추출하였으며, 2차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는 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층화변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의 모든 시군구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시군별 층화 2단계 집락추출을 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하였고, 2차 추출단위는 표본조사구내 가구를 단순임의추출(SRS) 하였다.

3) 조사항목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인적사항으로 ①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교육정도, 현재 수학여부,

⑥ 혼인상태 등을 기재한다.

두 번째로 일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⑦ 1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와 ⑧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 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⑨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조사대상기간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⑩ 조사대상 주간에 주된 일 이외에 대한 다른 일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⑪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한다. ⑫ 조사대상주간에 일한 사업체 직장, 주소, 주로하는 일,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하고 ⑬ 조사 대상주간에 대상자가 한일, 직위, 부서 등을 기재하며, ⑭ 조사대상 주간의 직장에서의 지위에(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등을 조사한다. ⑮ 직장일에 대한 시작시기와 ⑯ 직장(일)을 하기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⑰ 고용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⑱ 사회보험 가입 여부, ⑲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다음으로 구직에 관한 사항이다. 구직 활동여부로 ⑳ 지난 4주내 구직여부를 조사하며, ㉑ 조사대상 주간에 직장이 주어졌을 때 취업 가능여부, ㉒ 구직경로 및 방법 ㉓ 구직활동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는 ㉔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일을 원했는지 여부, ㉕ 직장일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㉖ 지난 1년간의 구직여부 ㉗ 조사대상주간에 주로 한일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직정에 관한 사항으로 ㉘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 ㉙이전 직장을 그만 둔 이유, ㉚ 이전에 일한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주로 하는 일, ㉛ 이전 직장에서의 지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4) 한국노동패널조사

(1) 통계 개요

가구 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²⁾.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고용노동부 수탁과제로 1998년도 최초 실시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관을 하였으며, 도시가구 5,000가구 및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2009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다가 2010년 제 13차 조사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2014년 제17차 조사때부터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3-7〉 한국노동패널조사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998년	제1차년도 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주관 -도시가구 5,000가구 및 그 가구가 조사대상
1999년 ~2006년	제2차년도 ~제9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2007년	제 10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CAPI부분 도입(실험설계)
2008년	제 11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CAPI 전면도입
2009년	제 12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주관 - 전국가구 단위로 추가표본(1.415)가구 추가
2010년 ~2012년	제 13차 ~제15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
2013년	제 16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관
2014 ~2016년	제 17차 ~제19차년도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현재 19차 조사까지 진행

자료: 통계청,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15.11

2007년 제 10차 노동패널조사 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CAPI(Computer Assited Personal Interview)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였다. 면접원이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한 후 컴퓨터(노트북)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조사한다.

2) <https://www.kli.re.kr/klips/contents.do?key=137>, 참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12월이며, 조사기간은 4월~10월이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공표주기 역시 1년이다.

(2) 표본추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추출된 표본과 2009년에 추가한 표본을 합친 통합표본 등 2종으로 되어 있다. 1998년도 표본은 5,000가구이며 통합표본은 2009년 추가 표집된 가구인 1,415가구가 합친 6,72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98년도 표본 추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이다. 단, 제주도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본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따르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98표본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19,025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2단계집락계통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우선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구에서 각 5 가구를 임의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5,000가구를 직접 추출하는 작업이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와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추출된 표본이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에 속하도록 하였다³⁾. 이에 따라 시의 동부 4,582가구와 시의 읍면부 418가구가 선정되었다.

② 2009년도 추가표본 추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09년 기존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 실시하였다. 당시 모집단은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토(제주도 포함) 내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으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표본틀로 활용하였다.

3) 방하남, 「한국 국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1999

표본추출방법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1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고 가구를 2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는 2단계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모집단에서 조사구를 추출할 때 동부는 조사구별 특성치(2005년 센서스 자료의 1~2인 가구수 및 단독주택 가구수로 산출한 값)에 비례하는, 읍면부는 조사구별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Probability Proportionat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표본 조사구에서 각 조사구당 5개, 총 1,41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기존의 표본에 포함시켰다.

(3) 조사항목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설문지로 구분된다. 설문지는 크게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나뉜다.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뉘며, 취업자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으로 나뉜다.

가구용 설문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주거 관련 사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사항 등이다.

취업자 개인에 대한 설문내용은 경제활동상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사항,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관련 사항,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 혼인상태, 고용형태 등을 조사한다.

미취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은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문항,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등이다. 여기에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현황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의 유형에 따라 조사표를 달리 구성하여 해당되는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지난 조사의 일자리 여부와 현재 일자리 지속 여부 및 임금형태(비임금, 임금)를 토대로 8개의 일자리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

이다.

또한 매년 본 조사 이외에 그 당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바탕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3-8〉 참조)

〈표 3-8〉 고용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인적사항	① 성명 ②가구주와의 관계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교육정도(전공학과, 졸업년도*) ⑥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	① 수입있는 일 여부 ②무급가족 일 여부 ③일시휴직 여부 ④다른 일 여부 ⑤취업시간 ⑥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⑦ 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⑧종사상지위 ⑨현 직장 취업시기 ⑩고용계약기간 ⑪ 3개월 평균임금 ⑫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주당 취업시간 ⑬이직횟수(이전직장 사업체 소 재지) ⑭이직사유 ⑮ 비동거사유
구직에 관한 사항	①구직활동여부 ②취업가능성 ③구직경로 및 방법 ④구직기간
기타 취업에 관한 사항	①취업희망여부 ②비구직 사유 ③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④주된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④직 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⑤종사상지위

자료: 통계청,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15.11

(4) 활용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 간 추적 조사하여 종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과정의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심도있는 정책 평가 및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각 조사항목과 조사활용 방안은 〈표 3-9〉와 같다.

〈표 3-9〉 한국고용패널조사 조사항목의 활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조사가구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활용
가계경제 특성	가계의 경제적 특성 분석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개인별 경제활동상태, 임금형태와 일자리 유형 등을 분석
취업자의 특성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경제주체들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15.11

4. 종합비교 및 시사점

〈표 3-10〉, 〈표 3-11〉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용관련 통계지표를 종합 비교를 한 것이다.

고용관련 통계 중에서 전수조사는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총조사이다. 경제총조사와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 시행하는 전수조사인데 비해 전국사업체조사는 매1년마다 시행된다. 나머지 통계들은 표본조사인데 한국고용패널조사만 패널을 구성하여 매년 조사하고 나머지는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패널조사는 패널의 고용정보를 다년간 축적하므로 횡단면과 시계열을 동시에 분석하기에는 최적화된 정보이다. 그러나 한국고용패널조사는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어촌지역 고용인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표 3-10〉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비교

구분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종류	지정통계	지정통계	지정통계
조사목적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매월 노동수요측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조사대상	전국사업체	전국사업체	사업체
조사주기	5년	매년	매월
조사유형	전수	전수	표본
고용관련 주요조사항목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로 분류하여 성별 구분하고 연간평균급여액	사업체별 고용종사자(성/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자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종사상 지위별/성별 종사자 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자수 변동사유, 소정근로일수 등
통계활용	경제조사 모집단 추출 경제구조파악	기업경영	노동정책

〈표 3-11〉 가구대상 고용조사의 비교

구분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 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패널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종류	지정통계	지정통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목적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정책에 활용하고 다른 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파악하여 노동시장분석, 고용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모든 가구	가구	가구	패널 가구
조사주기	5년	매월	1년	1년
조사유형	전수/표본조사	표본	표본	패널조사
고용관련 주요조사 항목	총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성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근로자부가조사, 비근로자부가조사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직장에 관한 사항	개인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 특성,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통계활용	인구주택 정책 및 타 통계 모집단	경제조사 모집단 추출 경제구조파악	지역 고용정책	가계경제, 개인별 경제활동 일자리, 비

고용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되기 때문에 월별 추세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만 표본조사인 관계로 어촌지역 고용인구 추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통계 조사의 합목적성이다. 고용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통계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해야 한다.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하는 고용통계는 다양하지만 통계생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조사 설문 문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촌지역 고용통계조사는 통계조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생산에 대한 경제성이다. 어촌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인 통계조사비용은 조사방법과 조사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통계조사나 행정통계의 가공 통계는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성있는 통계생산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집단 구축의 필요성이다. 표본통계의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집단의 구축이 잘되어 있다면 표본 추출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지역 사업체나 가구의 모집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구총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계는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때 경제활동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어촌지역 통계 생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 번째는 기존에 발표되는 통계를 가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통계 조사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통계를 가공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통계조사 발표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계발표 항목이 기존통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발표주기도 기존 통계의 발표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따른다.

새로운 통계방법 구축은 독자적 조사를 통하여 통계를 생산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의 설계를 통계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제4장

어촌지역 고용 통계 구축방안

1. 어촌지역 범위 설정

어촌지역 공간적 범주와 정의는 해양에서 5km 떨어진 지역, 10km 떨어진 지역 등 각 연구마다의 기준이 상이하다. 이는 어업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의 세력 범위에 대한 기준이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일 기준으로 어촌지역을 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소재한 어촌계의 세력권 범위를 어촌지역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어촌계의 세력권 범위에 대한 정의 역시 연구에 따라 상이한데 예를 들어, 어촌계가 소속하는 법정동, 법정리, 어촌계 소속 어업인의 거주지역, 어촌계 소속 어선의 출항 범위, 어촌계 소속 어항에 입출입 어선의 소재지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어촌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해양을 접하고 있는, 1개 이상의 어촌계가 소재하는 지역이다. 즉, 해양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촌지역이다. 내수면을 제외하는 이유는 어업이 존재하지만 어촌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단위로서의 어촌지역은 법정 읍면동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해양을 접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는 해양을 접하고 있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어촌지역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읍면동 지역 범주를 넘어설 경우 어촌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읍면동 지역 내 해양을 접하고 있지 않은 법정리는 어촌 지역에 포함시킨다. 이 지역을 포함하는 이유는 해양을 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읍면동 내에서는 해양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군을 예로 들면, 10개의 읍면 중 해양을 접하고 있지 않은 금강송면, 온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과 산하 모든 법정리가 어촌지역이다.

첫째, 기존통계는 전수조사 통계이어야 한다. 표본조사의 경우 샘플링이 기존 통계 조사 목적에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어촌지역 통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고용통계의 경우 시군 단위로 통계가 발표는 되지만 이를 어촌지역 고용통계로 활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표본추출을 할 때 어촌지역이 아닌 읍면동에서 표본이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통계의 원시자료를 이용해서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한다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수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둘째, 통계조사기관에서 읍면동 단위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수조사라도 읍면동의 원시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촌지역 통계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셋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원시데이터의 활용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원시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활용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면 원시데이터 제공을 거절하거나 통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넷째, 통계주기가 길지 않아야 한다. 전수조사라 해도 통계주기가 길다면 이에 시의성 있는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즉 통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통계는 전국사업체조사가 유일하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전수조사이면서도 통계청에서 읍면동단위로 원시데이터가 제공되어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원시데이터 활용지침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통계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과거의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구축하여 고용지수도 산출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국사업체조사가 1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된다. 또한 기존 통계의 원시데이터는 기존 통계 발표 이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 제공되므로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이 사업체이므로 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종사자로 집계되어 통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통계 구축방안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한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통계청으로부터 전국사업체 조사의 원시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로부터 어촌지역읍면동 통계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시 시군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집계해서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생산은 과거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도 가능해지며, 따라서 특정시기를 정하고 매년 고용지수도 생산 가능해진다.

〈그림 4-2〉 전국사업체 조사를 활용한 통계 생산과정



3) 어촌지역 사업체 통계 개요

(1) 통계 목적

어촌지역에 있는 사업체와 종사자를 파악하여 어촌지역 개발 정책에 활용 및 어촌개발 평가 정책에 활용

(2) 통계종류

일반통계

(3) 작성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작성유형

가공통계

(5) 조사대상

전국 어촌 읍면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

(6)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전국사업체 조사와 동일

(7) 조사주기

1년

(8) 조사체계

통계청 원시데이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통계결과(전국사업체 조사 활용)

전국사업체 조사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고용통계는 다음과 같다.

(1) 어촌지역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원 분포⁵⁾

어촌지역내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 <표 4-2>이다. 어촌지역내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보다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

⁵⁾ 어촌지역이 있는 연안시군의 통계(비어촌지역 수지도 포함)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어촌지역 집계치보다 과대추산된 것이다.

식점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은 전국 자료는 물론 시도, 시군 또는 마을 단위로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표 4-2〉 어촌지역내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구분	사업체(개사)	종사자(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981	11,468
B 광업 (05 ~ 08)	1,229	5,274
C 제조업 (10 ~ 33)	43,319	695,035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460	21,95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1,301	15,182
F 건설업 (41 ~ 42)	12,860	120,813
G 도매 및 소매업(45~47)	110,998	283,093
H 운수업(49~52)	33,127	162,026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96,346	259,54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1,998	16,729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4,015	46,99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10,970	36,04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5,631	51,17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5,224	85,24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289	73,157
P 교육 서비스업(85)	14,277	122,62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1,385	121,95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665	38,45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2,021	97,786
합계	408,096	2,264,55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 마이크로데이터 재분류

전국사업체 조사를 읍면동의 단위로 분류하여 읍면동단위의 사업체 및 종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4-3>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이다. 대포동의 경우 대포항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체와 종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남동구 논현동의 경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3>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구분	사업체(개사)	종사자(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1	28
B 광업 (05 ~ 08)	-	-
C 제조업 (10 ~ 33)	64	976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6	92
F 건설업 (41 ~ 42)	11	88
G 도매 및 소매업(45~47)	133	311
H 운수업(49~52)	17	12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476	1,06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1	3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2	1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7	1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3	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5	1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53
P 교육 서비스업(85)	8	6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	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1	8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7	125
합계	779	3,07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마이크로데이터 재분류

〈표 4-4〉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4년)

구분	사업체(개사)	종사자 (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
B 광업 (05 ~ 08)	-	-
C 제조업 (10 ~ 33)	20	11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	-
F 건설업 (41 ~ 42)	26	147
G 도매 및 소매업(45~47)	756	1,690
H 운수업(49~52)	237	329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362	1,16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2	5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5	44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59	18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23	7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5	2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42
P 교육 서비스업(85)	78	75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66	49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66	15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41	268
합계	1,849	5,43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마이크로데이터 재분류

(2) 지역별 어촌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시도별 현황⁶⁾

2014년도 어촌지역이 포함된 전국 연안시군의 통계수치를 시도별로 분류하면 〈그림 4-3〉과 같다. 경기지역의 종사자가 118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73만명, 경남과 인천이 70만명이며, 강원은 19만명 전북은 17만명이다. 여기는 도별로 분리하였으나, 시군구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⁶⁾ 어촌지역이 있는 연안시군의 통계(비어촌지역 수지도 포함)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어촌지역 집계치보다 과대추산된 것임.

3. 조사통계 구축방안

1) 조사 개요

〈그림 4-4〉는 어촌지역 고용통계 구축 개요도이다.

〈그림 4-4〉 어촌지역 고용통계 구축 개요

모집단 및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촌지역의 만 15세 이상 가구 ■ 가구 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표본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0가구
조사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억 8천만원 ~ 6억원
표본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확률) : 다단계 층화집락 계통추출 ■ 2인(비확률) : 지역별 할당 추출 (직업 고려)
산출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시군구별 고용지표 산출 (시군구 층화 추출) ■ 2인 : 광역별 고용지표 산출 (시군구 집락 추출)
조사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월 실시, 7~8월 데이터 처리, 9월 발표
조사 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실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소득

어촌지역 고용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어촌지역 내 가구를 방문하여, 15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창출 부가가치)을 지역 내/지역 외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모수 추정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조사 대상을 가구로 하는 이유는 어촌지역의 고용지표 중 소득을 추정해야 하는데, 소득이 주로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개개인을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비에 근거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모집단

에 비경제활동 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 통계청 인구 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하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센서스가 5년 주기로 산출되기에 연도별 지역별 경제활동 변동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구별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한 후 가구를 기준으로 어촌지역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 개별면접조사가 적절하다.

표본 추출은 확률표본 추출인 다단계 층화집락 계통 추출 방식과, 비확률표본 추출인 할당 추출이 가능하다. 조사는 6,500 가구 조사시 약 실사기간이 2개월, 데이터 처리 및 모수추정에 2개월, 분석 3개월 등 총 7개월이 소요된다.

2) 조사 방법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은 전화조사, 개별면접 조사, 우편조사 등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표 4-7>과 같다.

<표 4-7> 조사방법별 장단점

	개별면접 조사	전화 조사	우편 조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된 가구를 정확히 방문 ■ 확률표본추출 가능 ■ 조사 통제가 용이 (소득 부분 응답) ■ 기프트 제공으로 조사동기부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대량 조사 가능 ■ 저렴한 조사 비용 ■ 조사 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대량조사 가능 ■ 저렴한 조사 비용 ■ 기프트 제공으로 조사동기부여 가능 ■ 확률표본추출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간이 길고 도서지역 방문 힘들 ■ 조사비용 많이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된 가구에 정확히 조사 불가 ■ 확률표본추출 불가 ■ 기프트 제공 불가로 조사동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간이 김 ■ 조사통제 불가, 데이터 오류 우려 ■ 회수율이 낮을 경우 표본 Frame 외해

고용지표 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수 추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률표본 추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부분의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구 확률표본 추출이 되지 않는 전화조사는 적절한 조사방식이 되기 힘들

다. 우편조사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지역적 커버리지의 장점이 있지만, 회수율이 낮아, 표본 Frame 유지가 힘들고, 조사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표본추출

(1) 표본 수

어촌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내 가구의 고용지표를 산출한 후 시군구로 종합하고, 향후 광역(해역)으로 종합해야 한다. 따라서 읍면동별 고용지표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최소 50가구에서 150가구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단위로 고용지표 산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국 75개 시군구를 모두 추출해야 하고, 광역별 고용지표만이 필요하다면, 시군구를 집락추출하여도 무방하다.

시군구 내 어촌지역(읍면동) 표본수는 산정에는 시군구내 읍면동을 50% 집락추출⁷⁾하는 방법과 층화 후 모두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즉 1개 어촌지역별 조사 가구 수를 100가구로 본다면 25,000 가구에서 50,000 가구를 조사해야 하고, 1개 어촌지역에 가구 수를 50가구 조사한다면 12,500가구~25,000가구를 조사해야 한다. 1개 어촌지역에 가구 수를 25가구를 조사한다면 6,500~12,500 가구를 조사해야 한다.

어촌 고용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통계가 산출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군구를 층화 추출하고, 시군구 내 모든 어촌 지역(읍면동)도 추출하면 좋지만,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는 층화 추출하되, 어촌 지역(읍면동)은 집락추출을 하는 2안이 가장 적절하다.

⁷⁾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은 모집단에서 집단을 일차적으로 표집한 다음, 선정된 각 집단에서 구성원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다단계 표집방법이다. 주로 모집단을 총망라한 목록을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집락 내부는 이질적(heterogeneous)이고 집락 간에는 동질적(homogeneous)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집락추출법의 효율성은 모집단 요소들의 목록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달려있다

〈표 4-8〉 표본 추출 방식별 표본 가구 수

광역 추출		층화(전체)	
시군구 추출			
시군구 수		75	
장단점		시군구 통계 可, 비용 上	
읍면동 추출		층화(전체)	50% 집락
조사 어촌수		500	250
1개 어촌당 평균 가구수	100	50000 가구	25,000 가구
	50	25000 가구	12,500 가구
	25	12,500	6,500
비고		1안	2안

어촌 지역 내 조사 가구수를 100가구로 할 경우 확률표본 추출로서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오차는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한편, 도서나 소규모 향포구가 위치한 어촌지역은 모집단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촌 규모별로 추출 가구수를 차등화 하여 추정의 정교성과 비용의 적절성을 모두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모집단 층화/집락

층화의 기본 목적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통계 공표 단위에 따라 층 간의 독립적 추정이 가능한 17개 광역시도로 층화한 후 각 시도에서 읍면동으로 층화해야하지만, 17개 광역시도로 층화 한 후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다르게 소요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한다.

조사모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읍/면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가구와 아파트가구로 나누었으며 이를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③ 2차 층화: 거주 유형(아파트, 일반가구)

1차 층화 후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거주 유형을 고려 하지 않고 가구를 뽑는다면, 아파트와 주택이 같은 기준으로 조사되고, 읍면동의 대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광역시도별 거주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비율이 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어 2차 층화변수로 거주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표 4-11〉 조사모집단 광역시도별 거주 유형 현황

시도	전국 가구		어촌지역 가구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9,196,769	9,914,261	778,063	1,081,304
서울특별시	1,586,400	2,198,090	-	-
부산광역시	691,595	644,305	203,007	151,618
대구광역시	486,653	441,875	-	-
인천광역시	555,329	490,088	121,719	80,598
광주광역시	355,697	211,460	-	-
대전광역시	318,020	264,484	-	-
울산광역시	237,732	185,680	39,399	40,303
세종시	46,921	28,298	-	-
경기도	2,410,360	1,974,382	19,451	41,155
강원도	261,233	344,884	47,980	61,815
충청북도	274,002	327,854	-	-
충청남도	338,990	457,195	35,157	99,143
전라북도	327,120	390,191	12,669	35,714
전라남도	261,576	459,036	120,885	221,053
경상북도	401,582	661,142	32,404	80,257
경상남도	587,673	670,814	119,771	166,634
제주도	55,886	164,483	25,621	103,014

4) 조사 주기 및 조사 비용

어촌 지역 고용통계를 매해 실시한다고 하면, 1차 년도에는 모든 어촌계의 통계를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산출하고, 조사 가구를 패널을 구축한다. 2차 년도 이후에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변동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개별면접 비용은 1가구당 조사 비용이 약 7.7만원 가량 소요된다. 추가로 패널을 구축할 경우, 구축 비용과 유지 비용이 약 2만원 정도 더 소요 되어 약 9.7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민여행실태조사(패널조사)의 가구당 조사비는 약 10만원이다.

〈표 4-12〉 개별면접 1가구당 소요 비용

비목	세부 비목	금액
연구원 인건비		1.2 만원
실사 비용	응답자 기프트	1.0 만원
	면접원 수당	2.3 만원
	교통비/식비	1.0 만원
	데이터 처리(검증, 입력)	0.5 만원
일반 관리/이윤		1.0 만원
부가세		0.7 만원
합계		7.7 만원

〈표 4-13〉 가구수별 총 조사 비용

조사 가구수	패널 미구축 시 총 조사 금액 (단위 : 천원)		패널 구축 시 총 조사 금액 (단위 : 천원)	
	단가	총비용	단가	총비용
-				
50,000	₩ 77	₩ 3,850,000	₩ 97	₩ 4,850,000
25,000	₩ 77	₩ 1,925,000	₩ 97	₩ 2,425,000
12,500	₩ 77	₩ 962,500	₩ 97	₩ 1,212,500
6,250	₩ 77	₩ 481,250	₩ 97	₩ 606,250

표본 가구수별 총 비용을 산출하면, 6,250가구 조사 시, 패널을 구축하지 않고 개별면접 조사만 실시할 경우 4억 8,100만원, 패널을 구축할 경우 6억 625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비용은 약 17억원이다.

5)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어촌 지역 가구의 일반현황 및, 고용 현황, 고용 지속 여부, 어촌 고용 관련 현안, 어업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조사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조사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4> 어촌지역 고용조사 조사항목

분류	세부 문항
가구 일반 현황	가구원수, 가구원별 성별/연령/학력
고용 현황 (가구원별로 파악)	가구원별 직업/고용여부 : 어업, 어업 관련 산업(가공/유통/판매, 어촌관광, 어업 관련 기업체), 농업, 어업외 자영업, 일반기업체, 학생, 주부, 무직) 고용장소 (역내: 거주 시군구 내, 역외: 거주 시군구 외) 가구원별 고용종류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용) 가구원별 고용지속기간(상용직, 일용직), 고용 개월수 가구원별 연평균 임금 최저임금 수급 여부
고용 지속 여부	향후 고용 지속 의향, 그만둘 경우 대안(전업, 휴직)
어촌 고용현안	경기 동향, 고용 창출 요소, 고용 저해 요인 최근 10년 내 고용 변화 및 향후 전망

6) 조사절차

조사절차는 <그림 4-9> 와 같다.

〈그림 4-9〉 어촌지역 고용통계 조사 절차



조사단계는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조사준비단계에서는 모집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인구주택 총조사 모집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를 제공받으므로 표본추출후 표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만일 패널 구축시 1차때 조사대상을 기반으로 패널을 선정하고 매년 패널을 교체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모집단이 구축되고 표본집단 설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된다. 만일 현장검증이나 가구조사 실시에서 표본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표본설계에 반영하여 가구조사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제3단계는 분석 및 검증 활용단계이다. 응답과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통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통계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연계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및 요약

2015년 기준을 우리나라 어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31.4%에 해당하는 72개 시·군구이며,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국 3,538개 읍·면·동 중 15.8%인 560개이다. 어촌지역은 과거 1차 산업인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와 수산물가공, 유통은 물론 관광까지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고용창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와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수산업은 물론 어촌지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통계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촌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용지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타 고용관련 통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어촌지역 고용통계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산업관련 통계중 고용통계로 활용가능한 통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어업총조사나 어업조사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어촌지역에 있는 가구이기는 하지만,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가 조사대상이므로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어업인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의 수산업외 타산업에 대한 고용통계는 과소 집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산업실태조사의 경우 지역통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업에 대한 통계이다. 수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어촌계분류평정표 지역별로 어촌계 정보가 있어서 지역별 통계로는 유용하지만 고용관련 정보가 적기 때문에 어촌지역 고용통계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결국 현행 수산업관련 통계로는 어촌지역 고용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행 수산관련통계

로는 어촌지역 고용통계로 활용가능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전국단위로 조사되는 고용관련 통계를 가공하거나 어촌지역의 고용통계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고용관련 통계 중에서 전수조사는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총조사이다. 경제총조사와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 시행하는 전수조사인데 비해 전국사업체조사는 매1년마다 시행된다. 나머지 통계들은 표본조사인데 한국고용패널조사만 패널을 구성하여 매년 조사하고 나머지는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패널조사는 패널의 고용정보를 다년간 축적하므로 횡단면과 시계열을 동시에 분석하기에는 최적화된 정보이다. 그러나 한국고용패널조사는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어촌지역 고용통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촌지역 고용통계 생산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통계 조사의 합목적성이다. 고용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통계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해야 한다.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하는 고용통계는 다양하지만 통계생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조사 설문 문항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촌지역 고용통계조사는 통계조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생산에 대한 경제성이다. 어촌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인 통계조사비용은 조사방법과 조사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통계조사나 행정통계의 가공 통계는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성있는 통계생산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집단 구축의 필요성이다. 표본통계의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집단의 구축이 잘되어 있다면 표본 추출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지역 사업체나 가구의 모집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구총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계는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때 경제활동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고려했을 때 어촌지역 통계 생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기존에 발표되는 통계를 가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통계조사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통계조사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존 통계중 전국사업체조사를 가공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는 새로운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표 5-1>은 두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표 5-1〉 어촌지역 통계 생산방법의 비교

구분	(대안 1) 기존 통계 가공	(대안 2) 새로운 통계 구축
방법	전국사업체 조사에서 어촌지역의 읍면동 통계 추출	새로운 통계방법 구축
발표범위	75개 시군/ 읍면동 단위	시군단위
조사대상	사업체	가구
조사 유형	전수	표본
시기	1년	월, 분기, 반기, 년 선택가능 * 발표 횟수와 통계비용 비례
조사항목	어촌지역 사업체, 성별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업종별 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등	가구원에 관한 사항(성별, 나이,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 어업유형) 직업, 종사자 수, 취업형태, 임금(최저임금), 종사일 수, 기타 어업시설 만족도 등
비용	초기 - 2억(통계데이터 구축 설계 및 분석) 년간 5,000만원(운영 인건비)	연 1회 조사시 4~6억원
장점	· 비용 절감(경제적 통계) · 기존조사 활용 · 통계조사 발표의 위험 회피 · 과거 통계도 구축가능	· 새로운 통계 · 어촌지역 타켓 통계 가능 · 통계발표 항목 조정 가능 · 독자적 조사 및 통계 발표
단점	· 통계발표 항목 한계(기존통계와 동일) · 시군단위 발표로 어촌지역 의미 퇴색 · 타 기관에 의존 · 발표시기 지연으로 시의성 부족 · 도시거주민 포함 가능성 · 타도시 업체 종사자 배제 가능성 내포	· 과다 비용 발생(비경제적 통계) · 통계조사 발표 위험 발생

〈대안 1〉은 전국사업체조사를 가공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촌지역 내 읍면동 단위, 시군구, 도단위별로 사업체정보와 종사자 수, 종사자 지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자료를 단순 가공만 하면 되므로 경제적이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비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어촌지역에 거주 하되 비어촌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누락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안 2〉는 직접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안 2〉의 경우 어촌지역 가구를 샘플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대안 2〉는 어촌지역 고용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항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안 1〉과 〈대안 2〉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두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제언

1) 어촌지역내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어촌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와 사업체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지역내 사업체 모집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촌지역 산업분류상의 사업체 현황과 종사자를 알면 어촌지역의 경제 및 산업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사업체 모집단을 구축하는 경우 정부정책상 필요할 때마다 샘플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경제총조사 1년마다 전국 사업체 조사를 전수 실시 하므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받아 어촌지역의 사업체 모집단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어촌지역 시계열 고용DB 구축

통계의 중요한 의미는 횡단면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도 있지만 시계열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계열 변화는 어촌지역의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어촌지역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수산업·어촌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고용실태 조사 실시

현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해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에 의해 어촌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용실태는 수산업에 국한되어 조사되고 있다. 수산업의 다면화, 어촌지역의 관광산업 발달 등을 감안하면 어촌지역의 고용실태 변화는 기본계획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업 또는 어촌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법률화 시킬 필요가 있다.

4) 체계적인 어촌지역 고용관련 조사연구 필요

그동안 어촌지역 고용문제는 수산업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고용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최저임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경우 속성상 일용직이나 최저임금을 밀도는 임금을 받은 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변화는 도시보다는 어촌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어촌지역 고용패널 구축 필요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는 고용패널을 구축하여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농어촌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가구에 대한 고용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어 완전한 어촌지역의 고용조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계적인 어촌지역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농어촌 지역 고용실태에 대한 협동 통계조사 및 연구 필요

어촌지역의 경우 농촌에 인접해 있거나 농촌과 구별이 애매 모호한 경우도 있다. 특히 어업인 중에는 농업을 겸업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

촌 지역 고용실태에 대한 협동 통계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 통계조사는 연안시군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연안시군외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동연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4년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 완료보고」,
2014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6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 2015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통계정보보고서, 2015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표」, 20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조사표」, 2016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
- 통계청,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15.11
- 한국노동연구원, 「제18차(2-015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효율적인 수산통계 조직 구축방안」, 201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산업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2015
- 해양수산부, 「2015년 기준 수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15
- 해양수산부, 「수산업 특수분류 작성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 2015
- 방하남, 「한국 국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1999
- 송미령외, 「지역별 농촌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이계임외, 「농식품 기초통계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이경희외,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V)」, 한국노동연구원, 2016
- 홍민기외,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V)」, 한국노동연구원, 2016
- 홍민기외, 「노동패널자료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2016.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시스템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

(<https://mdis.kostat.go.kr/index.do>)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

(<http://survey.keis.or.kr/index.jsp>)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웹사이트

(<https://www.kli.re.kr/klips/index.do>)

부록

어촌 고용 통계 생산을 위한 설문조사

2017042102-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어촌 마을 주민들의 고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000리서 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촌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해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0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00 연구원
	조사 문의	(주)000	000 과장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SQ1	귀하의 거주지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SQ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SQ4	선생님은 이 마을에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만 () 년

PART A. 가구원 경제활동[농어촌 주민 공통문항]

Q01. 현재 같이 거주하시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조사	본인 포함 전체		명	※ 2016년 한 해 동안 9개월 이상 주중에 함께 거주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 직장 및 학업, 기타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함.
--------	----------	--	---	--

구분	가구원					
	가구주	1번 가구원	2번 가구원	3번 가구원	4번 가구원	5번 가구원
1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성별 1. 남자 2. 여자						
3 나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세	세	세	세	세	세
4 가구주와의 관계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형제/자매 5. 부모/시부모 6. 친척						
5 최종학력 1. 무학 2. 초교 3. 중교 4. 고교 5. 전문대 6. 대학(4년제) 7. 대학원(석사이상)						
6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7 어업 유형 1. 종사하지 않았음 -> 9번으로 가시오 2. 어선어업 3. 맨손어업 4. 나잠어업 5. 양식어업 6. 기타어업()						
8 어업 종사 시간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구분	가구원					
	가구주	1번 가구원	2번 가구원	3번 가구원	4번 가구원	5번 가구원
9 어업 관련 산업 유형						
1. 종사하지 않았음 -> 11번으로 가시오 2. 가공/유통/판매 3. 어촌관광 4. 어업 관련 기업체						
10 어업 관련 산업 종사 시간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11 어업 외 경제활동						
1. 농업 2. 임업 3. 축산업 4. 제조업 5. 건설업 6. 도매업·소매업 7. 숙박업·음식업 8. 기타 산업 9. 종사하지 않았음(학생, 주무, 무직) -> Q02번으로 가시오						
12 어업 외 종사시간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4. 3~6개월 미만 5. 6개월 이상						
13 고용형태						
1. 상용직 임금노동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						
14 고용장소						
1. 역내: 거주 시군구 내 2. 역외: 거주 시군구 외						
15 연 평균 임금						
1. 0~500만원 미만 2. 500만원~1천만원 미만 3. 1천만원~2천만원 미만 4. 2천만원~3천만원 미만 5. 3천만원~4천만원 미만 6. 4천만원~5천만원 미만 7. 5천만원~1억 미만 8. 1억원 이상						
15-1 시간당 급여 최저임금 여부						
1. 이상, 2. 최저임금, 3. 최저임금이하						
16 고용지속여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예 -> Q2로 가시오 2. 아니오						

Q04. 귀댁의 총 소득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 1)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2)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3) 큰 변화가 없다
 4)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5)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6) 잘 모르겠다

Q05. 귀댁의 총 소득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크게 감소할 것 2) 소폭 감소할 것 3) 큰 변화가 없다
 4) 소폭 증가할 것 5) 크게 증가할 것 6) 잘 모르겠다

Q06.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어촌)의 경기는 지난 3년 전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3년 전을 100으로 볼 때 나빠졌으면 100미만을 좋아졌으면 100이상으로 응답부탁드립니다. ()**Q07. 귀하의 어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 1) 수산업의 활성화(조업, 양식등) 2) 수산업 유관산업 활성화(유통, 판매)
 3) 관광산업의 활성화(낚시, 어촌관광) 4)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5) 주민복지의 증대로 소비 활성화 5) 기타()

Q08. 귀하는 어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저해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주민 고령화 2) 수산 자원의 부족
 3) 관광자원의 부족 4) 기업의 투자부족
 5) 정부의 지원 부족 6) 생산시설의 노후화
 7) 기타()

어업현안(어업인과 어업 관련 종사자가 있는 가구만 응답)

Q09. 귀하의 어촌 지역 수산업 시설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물양장	1	2	3	4	5
(2)	선착장	1	2	3	4	5
(3)	방파제	1	2	3	4	5
(4)	위판장	1	2	3	4	5
(5)	인양기	1	2	3	4	5
(6)	급유	1	2	3	4	5
(7)	급수	1	2	3	4	5
(8)	급빙	1	2	3	4	5

Q10. 귀하의 어촌 지역 수산업 시설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물양장	1	2	3	4	5
(2)	선착장	1	2	3	4	5
(3)	방파제	1	2	3	4	5
(4)	위판장	1	2	3	4	5
(5)	인양기	1	2	3	4	5
(6)	급유	1	2	3	4	5
(7)	급수	1	2	3	4	5
(8)	급빙	1	2	3	4	5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인쇄	2017년 8월 29일 인쇄
•발행	2017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